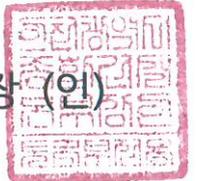


마전지구 체비지 매각 공고[수의계약]

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7일

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(인)



1. 매각 재산의 표시

| 번호 | 지구명 | BL-LT | 면적(m ²) (예정면적) | 용도 | 건폐율 | 용적율 | 높이 (세대수) | 예정가격(원)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
| 합계 | | 4필지 | 2,284.9 | | | | | 2,867,253,000 | |
| 1 | 마전 | 32-6 | 600.4 (572.5) | 단독/ 다세대/연립 | 60 | 200 | 4층이하 | 756,504,000 | |
| 2 | 마전 | 32-8 | 390.7 (356.0) | 단독/ 다세대/연립 | 60 | 200 | 4층이하 | 480,561,000 | |
| 3 | 마전 | 57-7 | 656.0 | 단독/ 다세대/연립 | 60 | 200 | 4층이하 | 826,560,000 | |
| 4 | 마전 | 57-8 | 637.8 | 단독/ 다세대/연립 | 60 | 200 | 4층이하 | 803,628,000 | |

☞ 위 매각대상 체비지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체비지 위치도, 지구단위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
2. 매각방법 : 수의계약

3. 매수자격 : 일반수요자 선착순

4. 매각금액 : 감정평가기관 2개 업체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 (가격시점 : 매수신청 접수일)

※ 매수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매각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격의 유효기간 적용

5. 신청 기간 및 장소

- 신청 기간 : 공고일 다음날 부터 ~
- 신청 장소 :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부 지역개발팀
- ※ 사정에 따라 매각 물건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매각 여부를 사전 확인 (방문 또는 유선)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매수 절차

- ① 매수신청서 접수
 - ② 수의계약 제한여부 검토 및 매각결정
 - ③ 감정평가(가격시점 : 매수신청 접수일)
 - ④ 매각금액 결정(감정평가기관 2개 업체 평가금액 산술평균액)
 - ⑤ 매각금액 및 계약체결 통보
 - ⑥ 매매계약체결(매각대금의 10퍼센트 시금고 예치)
- ※ 우리시(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)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체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신청은 무효로 하고 예치금은 우리시 (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)에 전액 귀속됩니다.

7. 대금 납부방법

- 매각 금액의 10%는 계약금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 -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중도금 및 잔금의 대금납부
 - 중도금 : 낙찰금액의 40%이상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
 - 잔 금 : 낙찰금액의 50%이상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
 - 대금 납부기간 경과조치
 -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, 중도금·잔금 납부기일을 경과할 경우 **연체이자율**(「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」 제38조 준용)을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.
 - 납기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우리시(인천종합건설본부)에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우리시 (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)에 귀속됩니다.
- ※ 선납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8. 정부수입인지

- 매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계약서 기재금액에 해당되는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계약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: 15만원
 - 계약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35만원

9.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

- 토지의 사용 가능 시기는 토지대금 완납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(폐지)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토지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
- 금회 매각 체비지는 인천광역시가 토지사용을 위한 부지조성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- 환지확정시 면적 증·감이 발생 될 수 있으며, 소유권 이전은 환지확정처분 후 토지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가능하며,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.
- 매수자의 명의변경은 **토지대금 완납후** 「인천광역시점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」 제25조의 규정(준용)에 적합할 경우 명의변경 가능하며, **환지 등기축탁시 등기법령에 의거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** 있습니다.

10. 기타 사항

- 매각 공고한 재산 중 사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제한 또는 제외,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매각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타인점유,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 및 지장물, 구축물, 지하 매장물 등으로 인한 재산활용의 제약 및 민원사항 등은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우리시(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)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지거나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. 따라서 지구별 지구단위 계획 및 관계법규, 현장사항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매수하셔야 합니다.
- 본 매각재산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(폐기물, 쓰레기, 나무, 건물 등)의 철거 및 이전·보상·명도는 매수자 책임이며, 이와 관련된 손해(이행강제금, 벌과금 등 제비용 부담 포함)도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팀(☎032-440-518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1. 매수신청 시 구비서류

- 매수신청서 1부(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팀 비치)
- 대리인인 경우 :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.

12.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

- 주민등록등본 1부.
- 인감증명서 1부(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)
-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(인지세 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)
- 대리인인 경우 :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.